

※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함)와(과)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BC 와(과) XYZ 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 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정의)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ABC 또는 XYZ 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 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 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제 1 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 3 조 (비밀의 표시)

-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

-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 3 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 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 3 조 제 2 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 1 항 제 6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료의 반환)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 7 조 (권리의 부존재 등)

-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

제 8 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 4 조, 제 5 조 및 제 7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위약벌)

-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 1 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BC'와(과) 'XYZ'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기업 또는 개인)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ABC”

(명칭)_____

(주소)_____

(대표자)_____ (인)

“XYZ”

(명칭)_____

(주소)_____

(대표자)_____ (인)